

2016.01.18

## 「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

### 1.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

-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재수출조건 수입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 세액 기준을 1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「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하였습니다.
- 그 동안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으나 이 기준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.
- 1월 15일부터 재수출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등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담보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- **시행일자 : 16. 1. 15.(금)**

#### 주요내용

- ① 재수출조건부 감면 담보생략 기준을 50만원으로 상향
- ② 신용담보, 정산제도 내용의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이관 반영(제3장, 제6장)
- ③ 가지번호를 연번 조문형식으로 정비하는 등 조문 정리